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48-1호 2003년 1월 23일(목)

제목1: 제 목 : 설대비 불법·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1. 목 적-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날(2.1)을 맞아 밀도살, 생체 및 지육에 강제적으로 물을 주입하는 행위 등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위반행위등 둔갑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

2. 기 간 : 2003.1.20 ~ 2003.1.31 (12일간)

◦ 도축장 - 생축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여 중량을 늘이는 행위

- 식육운반차량의 생축 수송
- 축산물검사관의 복무점검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가축의 도살·처리 기준 준수 및 축산물 검사기준에 의한 검사실 시 여부

◦ 도축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도축하는 행위

도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원 없이 도축 (밀도살) ◦ 생축지육의 강제급 수 (속칭·물먹인 소) ◦ 소·돼지를 냉동탑 차등으로 운반 ◦ 축산물등급판정을 받지 않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원, 시·도 ◦ 검역원, 시·도 ◦ 검역원, 시·도 ◦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 3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및 제11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 축산법 제28조
식육판매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영업행위 ◦ 도축검사를 받지 않은 식육을 판매 ◦ 젖소고가수입육 등을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 식육거래내역서작 성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원, 시·도 ◦ 검역원, 시·도 ◦ 검역원, 시·도 ◦ 검역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 3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가공업소	◦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미표시	◦ 검역원, 시·도	◦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4조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허위표시 ◦ 원산지 미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관원 ◦ 농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2003.6.27시행)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48-2호 2003년 1월 23일(목)

제목2: 호주산 생우 24일 부산항 도착

호주산 생우가 24일 국내 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산 생우 국내 반입은 지난 2001년 4월과 5월, 2002년 10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로 지난 8일 호주 캠멜라항을 출발해 24일 부산 감천항에 288마리, 인천항에 573마리가 각각 하역될 예정이다.

이들 생우는 검역원에서 보름 가량 각종 전염병 등 질병검사를 마친 뒤 정식 통관돼 다음 달 중순께 전북 진안군 모농원에 입식될 예정이다.

국내 반입된 수입생우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될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돼 유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전국한우협회측은 이들 생우의 수입저지를 위해 부산과 인천의 검역소 및 입식처로 알려진 농장 등에서 반입반대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발췌: 한국정보문화

제목3: 농가 정책자금 이자경감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 연 3%서 1.5% 인하 협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축산물, 농산물 등 전문성에 근거한 안전관리기능 수행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 '농림부'를 '식품농림부'로 부처 명칭을 개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농업을 단순히 키우고 재배하는 것에서 도축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의 애그리비즈니스 개념을 담은 조직으로 개편,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농축산물이 식품의 핵심인 만큼 생산부서에서 담당하되 식품의 업무 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부처 명칭 개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16대 대선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식품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은 정부조직명칭 개칭에 검토에 따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음도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 인수위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영농(양축)자금 등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하고, 이자를 연 3%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재경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등 관련부처로 하여금 구체적인 이자경감 방안을 협의도록 권고키로 했다는 것이다.

제목4: 인수위, 농업문제 해결 태스크포스팀 가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FTA, DDA 협상 등으로 위험에 직면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는 물론 행자부·복지부·교육부·재경부 관계자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특별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명재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은 지난 15일 축산관련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향후 노무현 정부는 농업문제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 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농업문제를 국정 특별과제로 선정하고 각 해당부서의 실무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거시적이고 총괄적인 대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 위원은 "농축산물의 개방화 물결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개방 시간을 늦추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협상하는 선대책 후협상의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은 "지금까지 추진돼 온 생산정책 중심의 규모화로는 선진국과의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방어차원에서 벗어나 농축산물 고급화를 추진하고 이를 수출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방으로 인해 감소할 농촌의 소득은 복지, 교육, 의보, 연금 등의 지원을 통해 보상하고 직거래 활성화와 농축산물 저장·보관부문의 투자를 통해 손실부분을 채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은 노 당선자의 '농업부문 10% 예산증액'공약과 관련 "이전의 농업투자가 선투자 후계획 방식을 선택해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계획을 먼저 세운 후 예산을 신청하면 그 가능성에 따라 10% 이상의 예산도 지급될 수 있다"며 탄력적으로 해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췌: 농수축산신문